

■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[별표] <개정 2021. 3. 2.>

차량의 용도, 규모, 배정대상, 차량 관리 · 운행 기준(제2조제2항 관련)

용도	규모	배정대상	차량 관리 · 운행 기준
승용 (전용)	대형 및 중형	○재판관 또는 사무처장 ○사무차장 ○수석부장연구관 또는 차 관급 공무원	○ 최단운행연한: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「물품관리법」 제16조 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 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○ 최단주행거리: 12만km 이상
승용 (업무용)	대형·중형·소형 및 경형	○ 특수업무 및 일반업무용	○ 최단운행연한: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「물품관리법」 제16조 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 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○ 최단주행거리: 12만km 이상
승합용 화물용 특수용	대형·중형·소형 및 경형	○ 일반업무용	○ 최단운행연한: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「물품관리법」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· 최단주행거리: 12만km 이상
※ 비 고 대형·중형·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.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다.			